

어떤 혜택이 있나요?



「R&D 사전심사」에 따른 혜택

-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.
* 단, 사실관계가 변경·누락되거나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
- 1 |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**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**에서 제외됩니다.
- 2 | 심의성실 원칙에 따라 심사결과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있더라도, **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.**
- 3 | 심사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R&D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**컨설팅 등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**
- 4 | 신고전 사전신청을 통해 **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.**

사전신청 문의는?

Q & A

Q 사전심사제도가 의무사항인지요?

A 사전심사제도는 사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주기 위한 제도로,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.

Q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?

A 국세청에서는 심사부서 외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과 엄격한 내부통제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·감독하고 있습니다.

Q 신고내용확인이나 세무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?

A 사전심사는 과세 목적이 아닌, 신고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완화, 불확실성 해소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. 관련 서류는 사전심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신청 문의

-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
TEL (044) 204-3333~9

서류 제출처

- (우)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
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



전국 어디서나 126
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을 한번에!

2020년 시행 「R&D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신청안내

「R&D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신청으로
성실신고에 대한 사전 지원도 받고,
세무상 불확실성과 가산세 부담도 없애고~!



「R&D 사전심사」 신청 제도란?

「R&D 사전심사」 도입

- 2020년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R&D 세액 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.

▶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

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·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. <신설 2019.2.12>



「R&D 사전심사」 도입

「R&D 사전심사」 도입 효과

납세자

R&D 공제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불복, 가산세 부과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완화

국세청

R&D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 친화적 조세행정 구현

「R&D 사전심사」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신청인

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(외국법인, 비거주자는 제외)

신청방법

- 법인세(소득세) 과세표준 신고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방법	· 우편, 흠탑스, 세무서 민원봉사실				
신청대상	· 이미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, 전체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, 금액 제한 없음				
신청기한	· 법인세(소득세)과세표준 신고 전 - 공제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후신고 전에 신청 가능				
제출 서류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신청서</td><td>· 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</td></tr> <tr> <td>첨부 서류</td><td>· 연구개발 보고서, 연구개발비 명세서, 기타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</td></tr> </table>	신청서	· 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	첨부 서류	· 연구개발 보고서, 연구개발비 명세서, 기타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신청서	· 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				
첨부 서류	· 연구개발 보고서, 연구개발비 명세서, 기타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				

※ 신청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 및 접수

- (신청인) 내국법인, 거주자
- (신청대상) R&D 세액공제 적정 여부
- (신청기한) 법인세(소득세)과세표준 신고 전
- 공제누락 분은 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후신고 전

사전 심사

- (제출서류) 연구개발보고서, 연구개발비명세서 등
- (사전심사)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제출서류 검토
- 필요한 경우, 현장확인 가능

결과 통보

- (결과통지) 서면으로 통지, 재심사 신청 가능
- (효력부여)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
과소신고가산세 면제

「R&D 사전심사」 내용은?

업무담당

- 국세청 법인세과(연구개발세정지원팀)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.

심사내용

-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 예정*인 연구·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·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.

* 지출 예정인 연구·인력개발비란?

이미 지출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·인력개발비를 의미함

① 기술검토

연구·인력 개발 활동이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조에 따른 연구·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

② 비용검토

연구·인력개발비가 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심사방법

-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.
(필요한 경우, 현장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)

심사결과

- 「사전심사 결과통지서」를 통지해 드립니다.
-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.